

## 이해 진술서 독립입양프로그램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귀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동의”란 귀하가 귀 자녀를 친자식처럼 양육하려는 입양 신청인(들)에게 영구적으로 입양시킬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입양 신청이 승인되면 귀하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본 양식과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본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부 담당자와 상의하여 첨부된 진술서를 모두 읽으십시오.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귀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과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이해 진술서 작성 방법 설명:

**본 이해 진술서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본 기관 담당자와 함께 두 개의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1. 귀 자녀를 입양시키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입양 신청인(들)이 귀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것을 귀하가 원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본 이해 진술서를 작성하십시오.
2. 본 문서에 기재된 모든 진술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본 기관의 담당자에게 귀하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 진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 번호 옆에 있는 칸에 약식 서명(이름 이니셜 기재)을 하십시오.
4.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 기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들은 후에도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 옆의 빈칸에 약식 서명을 하지 마십시오. 입양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자세한 설명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5. 모든 칸에 약식 서명을 하셨으면 본 양식 5페이지에 서명하십시오.
6. 이해 진술서와 입양 동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귀하에게 사본을 1부씩 드립니다.

**본 양식은 반드시 다음의 양식 가운데 하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AD 1A, AD 1F, AD 165, 또는 AD 4336**

# 이해 진술서

## 자녀에 대한 물리적 양육권을 입양 신청인(들)에게 양도한 부모

\_\_\_ 1. 본인은 본인의 자녀, \_\_\_\_\_을(를)  
아동의 이름

\_\_\_\_\_에게 영구적으로 입양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입양 신청인(들) 이름

\_\_\_ 2. 본인은 입양 신청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의 자녀를 입양시킬 양부모(들)를 선정했습니다.

### 제1 입양 신청인:

법적 성명: \_\_\_\_\_

연령: \_\_\_\_\_ 종교: \_\_\_\_\_ 인종 및 민족: \_\_\_\_\_

이전 결혼 횟수: \_\_\_\_\_ 직업: \_\_\_\_\_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기대 수명을 단축하는 건강 상태:

\_\_\_\_\_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에대한 부양 의무,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_\_\_\_\_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

\_\_\_\_\_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이력:

\_\_\_\_\_

### 제2 입양 신청인:

법적 성명: \_\_\_\_\_

연령: \_\_\_\_\_ 종교: \_\_\_\_\_ 인종 및 민족: \_\_\_\_\_

이전 결혼 횟수: \_\_\_\_\_ 직업: \_\_\_\_\_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기대 수명을 단축하는 건강 상태:

\_\_\_\_\_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에대한 부양 의무, 자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_\_\_\_\_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다른 범죄로 인해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

\_\_\_\_\_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이력:

\_\_\_\_\_

가족:

현재 결혼 기간: \_\_\_\_\_

대략적인 거주지 위치 또는 구체적인 주소(요청하는 경우):

\_\_\_\_\_

입양 신청인(들)의 가정에 거주하는 다른 자녀나 성인:

\_\_\_\_\_

- 3. 본인은 본인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양 동의 거부 양식(AD 20)에 서명하거나 입양 기관에 서신을 보내면, 본인이 자녀를 입양 신청인(들)에게 입양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입양 기관이 법원에 보고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4. 본인은 본인이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입양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양 신청인(들)이 본인의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본인은 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마 이 과정에 도움을 줄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5. 본인은 독립 입양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줄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고, 입양 신청인(들)에게 그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0달러(본인과 입양 신청인(들)이 더 높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한)까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6. 본인은 자녀 입양 계획에 대해 다른 전문가나 가족, 친구들과 상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7. 본인은 본인이 자녀 입양을 원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입양 기관에서 가족이나 건강, 금전 및 기타 문제에 도움을 줄 만한 곳을 소개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8. 본인은 30일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의 취소 권리 포기서(AD 929)에 서명하는 것 중 선행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입양 동의서 취소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0일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 9. 본인이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후 마음이 바뀌는 경우, 본인은 입양 동의를 취소하고 자녀를 본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진술서에 서명하여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부 또는 업무를 위임 받은 카운티 입양 기관 중 이 입양 케이스를 조사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동의 취소 권리 포기서(AD 929)에 서명하는 것 중에 더 선행하는 날짜가 지난 후에는 입양 동의를 취소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 10. 본인은 입양 동의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양 신청인(들)이 입양 신청을 취소하거나 법원이 입양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11. 본인은 법원이 입양을 승인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양 신청이 철회, 기각, 거부되는 경우, 입양 기관이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인의 자녀에 대하여 다른 계획을 세우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최근 주소를 입양 기관에 계속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12. 본인은 본인이 차후 입양에 대해 조사하는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제 자녀의 입양 상태(입양이 완료된 대략의 날짜, 혹은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 취소된 경우 본인 자녀에대한 입양을 다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13. 본인은 혈족이 본인의 자녀를 특별히 자신의 유언이나 신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법원이 자녀의 입양을 승인한 후에는 혈족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는 자신의 양부모(들)에게서 법적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 14. 본인은 입양 기관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입양 케이스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A. 법률에 명시된 특정 기관이 본인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신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B. 본인과 성인이 된 자녀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양식에 서명한 경우
  - C. 21세가 넘은 본인의 자녀가 본인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이 입양 기관의 기록에 기재된 본인의 신원과 가장 최근 주소를 공개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D. 21세가 넘은 본인의 자녀가 입양 기관의 기록에 기재된 자신의 입양성명과 가장 최근 주소를 본인에게 알려줘도 된다고 서면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그 정보를 요청한 경우
  - E. 자녀가 21세 미만이지만, 입양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기록에 기재된 본인의 신원과 가장 최근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하다고 확인한 경우
- 15. 본인은 독립 입양을 조사하는 기관의 기록에 언제든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16. 본인은 법원이 법원 입양 파일에 들어 있는 신원 정보 공개를 요청 받을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한 뒤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17. 본인은 본인 자녀의 입양 동의와 관련된 사실을 고의로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입양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기만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 선행하는 시점까지 법원에 본인 자녀의 입양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18. 본인은 법원이 입양을 승인한 후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법적인 부모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A. 본인은 더 이상 본인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없습니다.
  - B. 입양 신청인(들)이 부모(들)가 되어 본인의 자녀를 양육할 법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 C. 본인은 더 이상 본인 자녀의 양육이나 서비스, 소득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 D. 본인은 본인의 자녀를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섹션 C:**  
**캘리포니아 주 이외의 지역의 군부대에서 서명한 경우에는 섹션 C를작성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인물의 입회 하에 서명(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183.5조에 의거):**

20\_\_\_\_\_년 \_\_\_\_\_월 \_\_\_\_\_일, 아래에 서명한 장교인 저 \_\_\_\_\_  
장교 이름  
 앞에 개인적으로 출두한 \_\_\_\_\_  
부/모 이름은(는) 제가 알기로(혹은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기를) (a)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이거나, (b) 미국 군대에 복무 중인 사람의 배우자이거나, (c) 미국 및 파나마 운하지대,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제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거나 미군에 고용되었거나 미군과 함께 동행 중인 사람이자  
 본 법률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며, 그 혹은 그녀도 똑같은 일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서명인은 본 증서를 작성한  
 날짜에 그 혹은 그녀가 미국연방법전 제10편 936항 또는 1044a항(공법 90-632 및 101-510)의 조항에 의거하여 공증인의  
 일반적인 권한을 지닌 미군 장교라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20\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본인 앞에서 서약하고 서명하였음을 공증합니다.

장교 서명	계급 및 군번
병과	직책